

#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5조 (사업주 등의 의무)	▶ 사업주는 근로자(특수형태의 근로자 포함)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	
2	제6조 (근로자의 의무)	▶ 근로자는 이 법과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근로 감독관, 공단 등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.	
3	제16조 (관리감독자)	▶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	
4	제15조 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제17조 (안전관리자) 제18조 (보건관리자)	▶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 ▶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,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.	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5	제29조 (근로자 안전보건 교육)	▶ 채용시 교육 실시: 일용근로자(1시간 이상)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(8시간 이상) ▶ 작업 내용 변경시: 일용근로자(1시간 이상)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(2시간 이상) ▶ 특별 교육 실시: 일용근로자(2시간 이상)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(16시간 이상) ▶ 정기 안전보건 교육: 현업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(24시간 이상/년) ▶ 관리감독자 교육: 관리감독자(소속 직원 지휘·감독)를 지정,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	근로자 1명 당 50만원 이하 과태료 (관리감독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)
6	제34조 (법령 요지 등의 게시)	▶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7	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	▶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 가스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한다.(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)	
8	제37조 (안전보건표지의 설치·부착 등)	▶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·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	1개소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38조 (안전조치)	▶ 위험이 있는 작업장과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,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, 전기,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	5천만원 이하의 벌금
10	제39조 (보건조치)	▶ 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 기압, 온·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 부담작업,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하여야 한다. - 방독마스크, 방진마스크,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 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▶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·요인조사 실시(1회/3년)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.	5천만원 이하의 벌금
11	제51조 (사업주의 작업 중지) 제52조 (근로자의 작업 중지)	▶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▶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	
12	제54조 (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) 제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	▶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은폐 금지 - 중대재해발생시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- 일반재해발생시: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.	1천만원 이하의 벌금
13	제114조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	▶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(취급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 실시)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4	제125조 (작업환경측정)	▶ 작업장의 유해인자(소음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)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6개월에 1회 이상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5	제129조 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 (특수건강진단 등)	▶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▶ 일반건강진단 -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▶ 특수건강진단 -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고열 등 노출 근로재유해 인자별로 6개월~2년 1회)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6	제173조 (양벌규정)	▶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	

